

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영동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26일

영동군수

1. 조례명 :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개정(법률 제14535호, 2017.7.18.시행)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규제개선 반영으로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(안 제23조제5항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 (안 제25조의3)
-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인 연면적 합계 구간과 비율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사무소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견인코자 함(별표 2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(참조 : 도시건축과 건축팀, 전화: 740-3392 Fax: 740-33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 조례 제 호

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)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주택개량사업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) 대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·건축신고·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접수되어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 2】

업무대행 수수료 (제24조제1항 관련)

연면적 합계	허가 · 신고전 현장조사	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	사용승인 현장조사
495제곱미터(주거용은 660제곱미터) 미만	대가기준의 30%	대가기준의 40%	대가기준의 50%
495제곱미터(주거용은 660제곱미터)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50%	대가기준의 60%	대가기준의 75%
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60%	대가기준의 80%	대가기준의 100%
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90%	대가기준의 120%	대가기준의 150%
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120%	대가기준의 160%	대가기준의 200%
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150%	대가기준의 200%	대가기준의 250%
10만 제곱미터 이상	대가기준의 180%	대가기준의 240%	대가기준의 300%

- “대가기준”이라 함은 『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』 제31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(산업통상자원부고시)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『통계법』에 따라 조사·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.
 * 대가기준의 100%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.
- 용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.
-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~ ④ (생 략)</p> <p><u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 발생 일로부터 1년간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법 25조의2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</p> <p>2.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</p> <p>3.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</p> <p>⑥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3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u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</p> <p>제25조의3(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)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주택개량사업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</p>

0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
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
행하는 사업을 말한다) 대상인
단독주택을 말한다.

[별표 2]

연면적 합계	허가·신고전 현장조사	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	사용승인 현장조사
<u>200제곱미터 미만</u>	대가기준의 <u>8%</u>	대가기준의 <u>10%</u>	대가기준의 <u>12%</u>
<u>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</u>	대가기준의 <u>1 5%</u>	대가기준의 <u>25%</u>	대가기준의 <u>50%</u>
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3 0%</u>	대가기준의 <u>50%</u>	대가기준의 100%
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4 5%</u>	대가기준의 <u>75%</u>	대가기준의 150%
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6 0%</u>	대가기준의 <u>100%</u>	대가기준의 200%
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8 0%</u>	대가기준의 <u>125%</u>	대가기준의 250%
10만 제곱미터 이상	대가기준의 <u>1 30%</u>	대가기준의 <u>150%</u>	대가기준의 300%

[별표 2]

연면적 합계	허가·신고전 현장조사	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	사용승인 현장조사
<u>495제곱미터 (주거용은 660제곱 미터) 미만</u>	대가기준의 <u>30%</u>	대가기준의 <u>40%</u>	대가기준의 <u>50%</u>
<u>495제곱미터 (주거용은 660제곱 미터)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</u>	대가기준의 <u>50%</u>	대가기준의 <u>60%</u>	대가기준의 <u>75%</u>
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60%</u>	대가기준의 <u>80%</u>	대가기준의 100%
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90%</u>	대가기준의 <u>120%</u>	대가기준의 150%
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120%</u>	대가기준의 <u>160%</u>	대가기준의 200%
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	대가기준의 <u>150%</u>	대가기준의 <u>200%</u>	대가기준의 250%
10만 제곱미터 이상	대가기준의 <u>180%</u>	대가기준의 <u>240%</u>	대가기준의 300%

< 관 계 법령 >

① 건축법
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35조의2(주택의 유지·관리 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·보수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, 응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응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

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건축법 시행령

제20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
2.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.

③ 농어촌정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"생활환경정비사업"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,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·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,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
 - 나.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
 - 다.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
 - 라. 간이 상수도, 마을하수도(「하수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) 및 오수·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
 - 마.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(定住生活圈) 개발사업
 - 바. 빈집의 정비
 - 사.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
 - 아. 치산녹화(治山綠化)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·확충
 - 자. 농어촌 주택의 개량(신축·증축·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사업

- 차. 슬레이트(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·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 및 처리 사업
- 카.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